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2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정희용·서천호·김선교

박덕흠 • 고동진 • 백종헌

윤재옥 • 김성원 • 박충권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제24조).

법률 제 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 중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생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
	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
	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과 관련
	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u>라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③ 제1항 및 제2항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u>기상</u>	외부에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	,
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